

사전자산배분기준



사전자산배분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 따라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 내 운용담당자 등 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를 포함하여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법 제 80 조 제 1 항의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절차없이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전거래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공모주 수요예측 및 청약
3.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4.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이 기준은 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 배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 11 조부터 제 13 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 80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 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 5 조(자산배분 원칙) ①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펀드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 처분한 자산은 매매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격주문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접수시간 순서대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펀드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펀드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 처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실제 취득, 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미리 정한 펀드별 주문수량을 기초로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펀드 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1. 법규 및 규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2.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법규 및 규약 비율을 맞추기 위한 주문의 경우
3.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 주문의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⑥ 운용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⑦ 공모주 청약 배분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사전자산배분 대상 공모주청약 투자신탁을 선정하여, 청약일 전일의 각 투자신탁별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수요예측에 참여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집합투자기구공모주청약에관한 지침'에 준하도록 한다.

제 6 조(자산배분시스템)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제 7 조(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 건별로 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 8 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① 회사는 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 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 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 1 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 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 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배분하되,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우 선적 또는 추가적인 배분을 할 수 있다.

1. 법규 및 규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2. 배분 대상 펀드가 MMF 및 채권형(단기어음펀드 포함) 펀드의 경우
3. 배분 대상 펀드가 해지 예정인 펀드 및 설정 1 개월 이내의 펀드(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에는 6 개월)의 경우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동성이 10 억 이하의 펀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한 안분 배분 순위에 있어 최후 순위로 안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동성이 큰 펀드 순위로 안분할 수 있다.

⑤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운용담당자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또는 최후 순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담당자는 해당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 12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 1 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 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 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11 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① 규칙 제 10 조제 4 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운용 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택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 12 조(운용담당자의 업무)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 13 조(매매담당자의 업무)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